

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94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1. 25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1. 28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5. 12. 12.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조례에 위임한 수수료 항목은 신설하고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근거법령 및 요율이 각 개별법령에 명시한 수수료는 삭제하여 신뢰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인감에 관한 증명은 상위 법률에 명시한 수수료이므로 삭제함.(안 별표1)
나.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호당 500원으로 신설함.(안 별표1)
다.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 및 어선원부 등본의 열람 및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함.(안 별표1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조례에 위임한 수수료 항목은 현실에 맞게 요율을 조정하여 신설하고,
 -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근거 조항 및 요율이 각 개별법령에 명시한 수수료 항목은 삭제하여 대주민 신뢰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경상남도로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 업무 추진 철저에 따른 공문지시와 상위법령에 맞게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, 신설대상 수수료 항목의 원가 분석액에 의한 수수료 산정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, 수수료 예정요율이 타시·군 수수료 요율과 비교하여 적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제증명 등 수수료 원가계산 조사는 언제 합니까 ?
- 답 : 변경되는 시점에서 조사합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12.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